

농지전용 [] 허가
[] 변경허가 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시·군·구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10일 20일 30일	
신 청 인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우 편 물 수 령 지	(전화번호 :)			
전용하려는 농 지	소재지	번지 외 필지			
	구 분	계 (m ²)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비농지 포함)		m ² (농업진흥지역 m ²)			
사업기간	착공 예정 일 : 년 월 일	준공 예정 일 : 년 월 일			
전용목적					
농지보전 부 담 금 납부방법	[]일시납부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농지법」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 · 도 지 사 귀하
시장 · 군수 · 자치구구청장

첨부서류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위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임야도 및 지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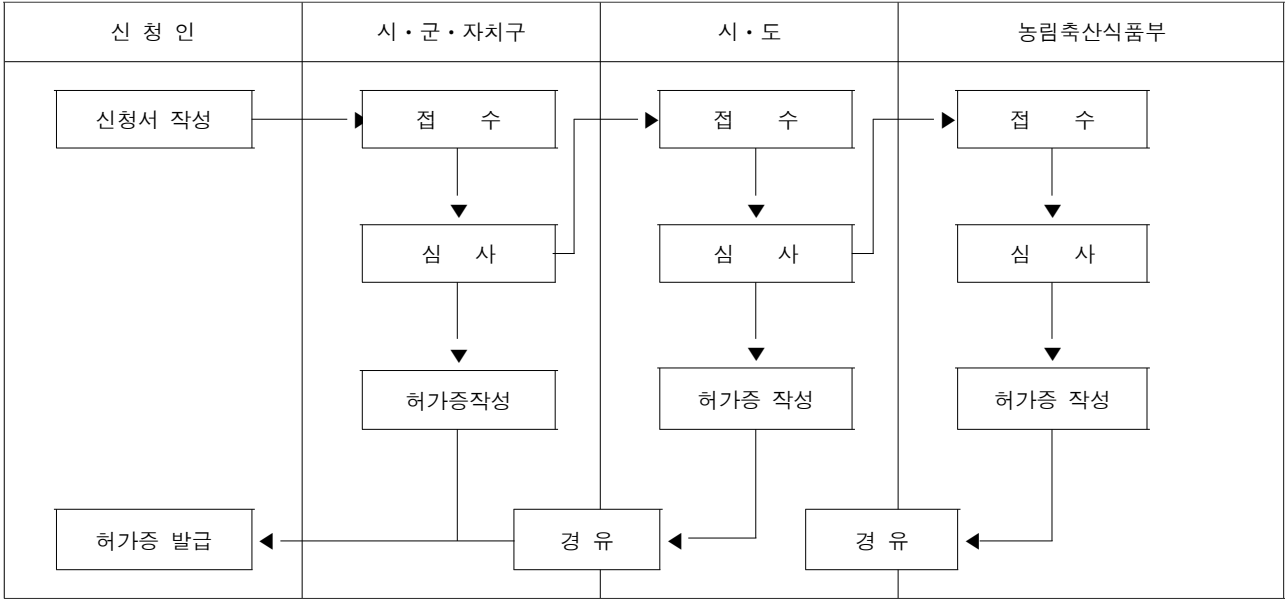
※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m²]

전용신청농지명세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전용 면적(㎡)	주재배 작물명
시·군	읍·면	리·동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농지전용허가권한(「농지법 시행령」 제71조)

구분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시·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	3천㎡ 미만	3천㎡ 이상 ~ 3만㎡ 미만	3만㎡ 이상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3만㎡ 미만	3만㎡ 이상 ~ 30만㎡ 미만	30만㎡ 이상